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법과는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○ 서울시는 2010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

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

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여

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연기했습니다.

-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다양한 부정부패 방지책이 마련되어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, 시공자 선정 전까지 자금 유통이 어려워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.
  
-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조기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